

생산자는 가격 만족, 소비자는 품질 만족

‘얼굴 있는 농산물’로 신용거래 실현



윤 병 일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사관리과장

품질인증 왜 시행하게 됐나

오늘날 우리 농업의 생산구조는 상업적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 확대와 주산단지화가 진전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또한 유통물량 증대에 따라 대량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산·유통·소비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능률 제고, 공정거래 실현,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규격화 사업을 추진코자 '83년부터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을 제정, 보급하여 왔으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규격화 정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 및 표시의 적정화가 미흡하여 포장외부 표시가 부실하고 산지·품종·품질을 속이는 부당표시, 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생산자로서는 자기

생산물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준이 없고 소비자로서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유통관계자로서는 유통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 결과, 선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상품성과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규격화의 부진, 통일된 품질 및 표시기준의 미흡, 생산농민의 자기 상표 개발취약, 일부 형식에 치우친 생산자단체의 자체 품질관리, 전문성·통일성이 결여되고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증제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에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산물의 국정 검사기관으로서 경험과 기술,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국립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92.7.1부터 실시토록 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와 신용거래 실현을 위해 우수농산물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토록 유도하여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

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출발한 것이다.

이에따라 '92.4.22 농림수산부 고시 제92-18호로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제정함으로써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설정절차와 품질인증제의 세부 실시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 요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등)와 소비자 보호법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으나 지난 6월 11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이 공포됨으로써 농산물 품질인증제의 직접 모법이 제정되었으며 오는 9월 중 시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농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요약해 보면, 우수 농산물 또는 지역 특산물로서 자랑할 만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또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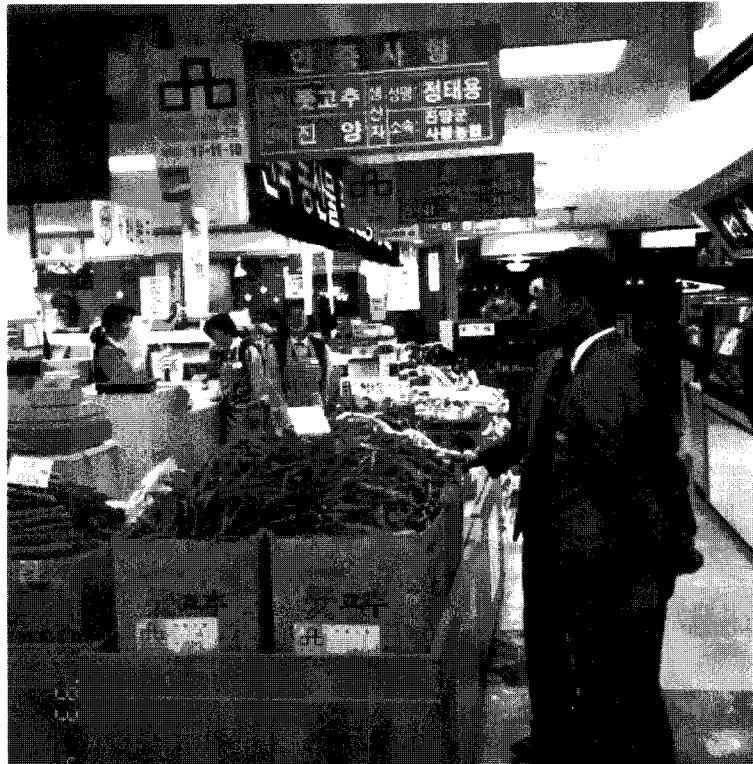
그림1. 품질인증표지(예)

산자단체가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에 인증 신청을 하면 산지·산년·품종·품위·무게·당도·재배조건(수경재배) 등에 대해 생산조건과 품질관리 실태를 현지 조사한 후 행정·지도 기관, 농협, 검사소, 생산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군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인증표지(그림1)를 부착 출하토록 하는 것이며, 출하전 및 출하품조사는 물론 유통과정에서도 인증품의 내용물과 인증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사후관리하는 것이다.

한번 승인된 인증표지의 사용은 당해 품목의 1작기에 한하여 유효하나 인증품 출하후 유통과정에서 물의가 없다면 인증절차를 생략하여 계속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년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92. 7. 1 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1년동안 사업결과를 보면 초년도로서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과 절차를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동안 35품목에 483건을 승인, 115시·군에서 복숭아, 쌀등 33개 품목 10,423톤(표 1)을 품질인증 품으로 도매시장, 공판장, 직매장, 유통업소등에 출하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도 비인증품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인증제



품질인증 농산물 기획상품전(신세계백화점 93. 4. 20~4. 25)

의 성과거량 및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유상표 개발이 취약한 생산자의 신용도 제고: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선전·홍보할 수 없는 대다수 생산자로서는 정부 인증에 따른 신뢰성을 바탕으로 출하, 판매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용도를 얻게되었다.

② 농산물의 등급화·규격화사업 정착유도: 정부 및 농협에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 권장하여 등급화·규

격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반면에 인증제 실시로 출하규격을 인증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규격화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과 이를 행하고자 하는 의식이 과급되면서 농산물 규격화·등급화 사업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③ 상품표시제 및 공정거래 실현
도모: 인증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는 인증받은 내용(산지·산년·품종·등급·무게·개수)과 생산자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필수 표시사항으로 반드시 표시하고 부당표시를 금

그림2. 인증 절차(시행체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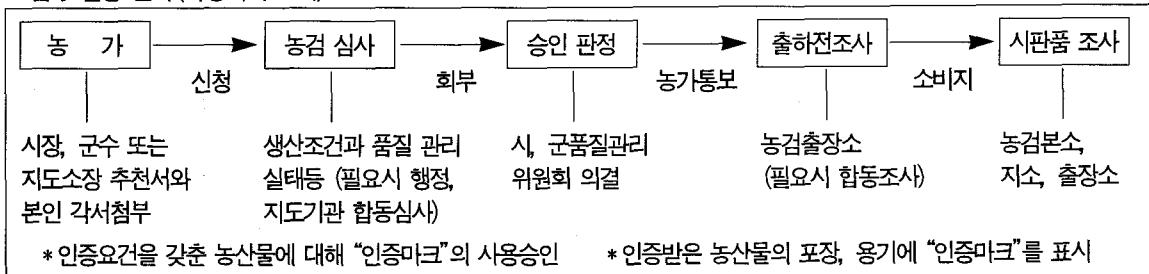


표1. 종류별, 품목별 출하실적

종 류	출 하 품 목	출하수량(톤)		
		계	'93	'92
곡 류(1)	쌀	3,583	3,357	227
과실류(10)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감귤, 꽂감, 참다래, 유자, 금귤	4,193	802	3,391
채소류(17)	메론, 토마토, 오이, 미나리, 풋고추, 딸기, 마른고추, 마른취나물, 케일, 상추(수경재배), 쪽갓(수경재배) 참외, 가지, 호박, 깻잎, 두릅, 복수박	2,546	2,409	137
서 류(2)	감자, 고구마	27	10	17
특작류(3)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오미자	73	54	19
계	33 품목	10,423톤	6,632	3,791

하도록하여 선별·선과등의 철저로 품질상태가 우수하여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보고 믿고 살 수 있게 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상품표시제를 실현하게 되었다.

④ 우수농산물, 지역특산물 출하
확대: 정부인증품의 공신력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서 인증받지 않은 농가도 인증에 참여코자 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농산물의 생산·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일반 출하품에 비해 대부분 약 10% 높은 가격으로 출하

됨(표 2)으로써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출하량도 시행초기인 92년 6개월 동안에 비해 93년 같은 기간에 75%(2,841톤)가 더 증가함으로써 인증받은 우수농산물의 출하가 확대되고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별, 선과, 포장작업등 여러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이 더 소

요되는 형편이며 정부 인증품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의 특성상 작황이나 시장 출하물량에 따라 가격 진폭이 크거나 꾸준한 가격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품목별 유통량에 비해 인증물량이 극히 적어 구입하기가 어렵고 채소류의 일부 품목은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실시 기간이 짧아 인증품에 대한 인식도 가 낮았다.

유통 및 제도측면에서 보면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기간이 짧거나(딸기, 신선채소) 산지·품종에 따른 품질 및 가격 차이가 없는 품목의 인증은 성가제고가 곤란하였다. 인증기준이 산지·산년·품종·품위·무게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맛·향기등 소비자 구매의욕 촉진이 곤란한 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유통종사자들의 인증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성가거양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 함유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표2. 출하 우수사례

품 목	주 요 산 지	단량(kg)	판매가격(원)	비인증품대비(원)
쌀	경기이천, 전북계화도	20	32,000	+3,000~4,000
복숭아	충남연기, 전북전주	15	33,000	+3,000
포도	경북상주 모동	15	22,000~25,000	+2,500~3,000
오이	전남구례, 광양	20	29,000~33,000	+2,000~3,000
느타리버섯	경기광주	4	10,000	+2,000
상추	경기광주(수경재배)	150	720	+70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온 일반 농산물의 단순 사실증명에서 앞으로는 1품 1등주의, 고품질·지속농업의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특산품이나 특수한 재배법에 의한 농산물 중 고품질이거나 유기재배등과 같이 특징이 있어 다른 농산물보다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경우에 그 품질을 인증하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다.

즉, 정부인증의 공신력과 품격이 유지되도록 인증 대상품목을 쌀과 사과·포도 등 주요 품목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자질과 조직을 갖춘 인증 대상자를 엄선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품질인증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적정한 품목의 선정과 이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상표(品)의 품격을 유지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나 자질이

없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결국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해 품목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형, 토양, 수질, 기상조건 등을 갖춘 생산 포장조건과 선진 생산기술, 선별·선과·저장·가공·포장작업의 현대화 시설, 대도시 시장으로의 유리한 출하조건 등을 갖추어야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증대상자의 적정선정을 위하여 각종 구비요건을 현지실사를 통하여 점수제로 체크리스트화 하여 일정수준 이상에 있는 경우만을 인증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소포장(5kg이하) 인증품을 적극 출하토록 유도하고 산지의 품질인증품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의 대형유통업체간에 정보교환 및 알선으로 직거래를 추진하거나 도매시장 및 공공단체의 직판장 등에서도 인증품을 확대취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

다시 말하면 인증품이 소비자에게는 품질면에서, 생산자에게는 가격 면에서 서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포장의 조건, 재배 관리실태 및 인증품의 출하과정을 일일이 확인 인증함은 물론 직거래 추진을 통한 판로확보와 시장가격, 거래동향도 파악하는 동시에 언론매체, 공중정보통신망(금년 9월부터 "천리안"에서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립농산물검사소로서는 생산에서 유통·소비단계까지의 총괄 관리체계를 갖추어 철저하게 점검 관리 할 계획으로 있다. 소비자들도 브랜드 마크가 있는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품질인증제의 정착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잔류농약 또는 위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유기재배, 무농약, 무화학비료 또는 청정재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금년내에 상추·케일 등 신선채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인증품으로 자리를 잡아 고품농업·지속농업·수출농업을 위한 선두역할이 되어야 하며 농산물 품질인증제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생산자 조직이 소비자들에게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자율인증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